

고그시성	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공 급 시 설	제정일자	2020.12.21
안전수칙 업무절차서	개정번호	0
	페 이 지	1/36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개정번호	제・개정일자	작성자	주요 개정내용 및 사유
0	2020.12.21	이지민	업무절차서 최초 제정



주관부서 안전솔루션팀 제정일자 2020.12.21 개정번호 0 2/36

페 이 지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목 차

<u>항 목</u>	<u>페이지</u>
1. 정의	3
2. 책임과 권한	3
3. 업무절차	3
3.1 재·개정 검토	3
3.2 재·개정안 작성	3
3.3 승 인	3
3.4 현장적용	4
3.5 Process 모니터링 및 측정	4
4. 관련문서	4
5. 기록관리	4
6. 첨부	4

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3/36

1. 정의

1.1 안전수칙

회사 내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수하도록 정해진 규칙 또는 준수해야 할 규칙을 말한다.

2. 책임과 권한

2.1 안전관리부총괄자

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종합적 관리·감독 및 안전수칙 업무절차서 개정 승인

2.2 안전솔루션팀장

제 · 개정된 안전수칙 전문 관리 및 보존

- 2.3 각 팀장
 - 1) 안전수칙 제정·운영
 - 2)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작업에 임하지 못하도록 관리
 - 3) 전 팀원에게 교육 및 지정된 작업장 부착
- 2.4 팀원
 - 1) 작업개시 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
 - 2) 안전수칙에 문제점 발견 시 소속 팀장에게 즉시 보고

3. 업무절차

안전수칙관리는 "안전수칙관리 Process(부표1)"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3.1 재·개정 검토

각 팀장은 안전수칙의 제정이 필요한 작업 및 사항에 대하여 파악 검토한다.

3.2 재·개정(안) 작성

각 팀장은 현장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·개정(안)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안전솔루션팀장에게 통보한다.

3.3 승인

안전솔루션팀장은 통보받은 제·개정(안)에 대하여 검토 후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승인을 득하여 제·개정 작업을 진행한다.

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4/36

3.4 현장적용

- 회사의 모든 종사자들은 본 규정에서 규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.
 (단, 작업 절차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작업은 승인 받은 사항을 준수한다.)
- 2) 각 작업장은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관리한다.
- 3) 안전수칙 보존기한은 관련 작업 존속 시까지 보존한다.
- 3.5 Process 모니터링 및 측정

각 팀장은 수시로 안전수칙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를 관리한다.

4. 관련문서

4.1 안전관리규정(JBSMS-0100)

5. 기록관리

6. 첨부

- 6.1 부표
 - 1) 안전수칙관리 Process
 - 2) 표준작업 안전수칙
 - 가)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
 - 나) 정리정돈 5요소 습관화
 - 다) 일반 안전수칙
 - 라) 순회점검 안전수칙
 - 마) 공사관리담당자 안전수칙
 - 바) 작업복장 및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
 - 사) 용접 및 절단작업 안전수칙
 - 아) 전기 안전수칙
 - 자) 전기 및 기계작업 안전수칙
 - 차) 정비작업 시 안전수칙
 - 카) 운반 및 사다리작업 안전수칙
 - 타) 화재 안전수칙
 - 파) 차량운행 안전수칙
 - 하) 통행 안전수칙
 - 갸) 수공구 안전수칙
 - 냐) 적재 안전수칙

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페이지 5/3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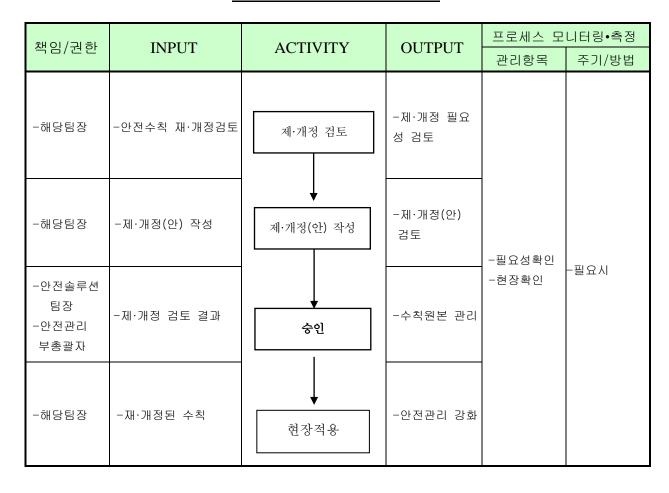
- 다) 방문자 수칙
- 3) 가스작업 안전수칙
 - 가) 상황실 안전수칙
 - 나) 정압기실 안전수칙
 - 다) 정압기 분해점검 안전수칙
 - 라) 가스누설 시 안전수칙
 - 마) 기존배관 연결작업 안전수칙
 - 바) 구멍 뚫기 작업 안전수칙
 - 사) 가스백(GAS BAG)절단연결 작업 안전수칙
 - 아) 퍼지 및 가스공급 안전수칙
 - 자) 퍼지작업 안전수칙
 - 차) 굴착작업 안전수칙
 - 카) 용접작업 안전수칙
 - 타) 가스공급시설 점검 안전수칙
 - 파) 가스사용 안전수칙 【끝】



고그시성	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공 급 시 설	제정일자	2020.12.21
안전수칙 업무절차서	개정번호	0
	페 이 지	6/36

부표1

안전수칙관리 Process



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7/36

페 이 지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부표2-가

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

- 1. 작업 전 안전점검, 작업 중 정리정돈
- 2.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
- 3.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
- 4. 유해·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
- 5. 기계·설비 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
- 6. 프레스, 전단기, 압력용기, 둥급톱에 방호장치 설치
- 7. 전기활선작업 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
- 8. 고소작업시 안전난간, 개구부 덮개 설치
- 9.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
- 10. 용접시 인화성·폭발성 물질 격리
- 11.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



공	급	λΙ	설
\sim		, , i	

제정일자 개정번호

페 이 지

주관부서 안전솔루션팀 2020.12.21 0

8/36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부표2-나

정리정돈 5요소 습관화

- 1. "정리"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이다.
- 2."정돈"이란 필요한 것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각기 정해진 장소에 똑바로 놓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함이다.
- 3. "청소"란 먼지, 오염,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항상 깨끗이 함이다.
- 4. "청결"이란 "정리, 정돈, 청소"의 3요소를 유지함이다.
- 5. "준수"란 현장규칙이나 올바른 작업을 몸에 익혀 언제나 똑바로 지키는 것이다.



주관부서 안전솔루션팀 제정일자 2020.12.21 개정번호 0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페 이 지 9/36

부표2-다

일반 안전수칙

- 1. 작업 시에는 안전작업복, 안전모,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구(보안경, 장갑, 마스크 등)를 착용해야 한다.
- 2.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흡연이나 화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.
- 3. 출입제한장소는 담당자의 허가 없이는 출입해서는 안된다.
- 4. 제반 안전조치 및 지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- 5. 주요시설에는 위험물질의 반입을 금하며 음주 후 출입해서는 안된다.
- 6. 전 직원은 자기부서에 비치된 소화장비, 기구의 위치 및 사용 방법을 숙지 하여야 한다.
- 7. 작업장은 항상 청결, 정돈해야 하며 작업 후에는 주변을 정리하고 확인해야 한다.
- 8.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의 대소를 막론하고 보고하여야 한다.
- 9. 가연성 물질, 위험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.
- 10. 의사 소통은 의심스러우면 반복하여 묻고 어떠한 경우이건 안전을 제일로 한다.
- 11. 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전 점검 후 한다.
- 12. 인화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 취급을 엄금한다.
- 13. 모든 설비는 담당자 이외에는 취급을 금한다.
- 14.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한다.
- 15. 모든 밸브는 급격히 열거나 닫지 말아야 한다.

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10/36

부표2-라

순회점검 안전수칙

1. 복장 보호구

- 가. 작업 시에는 지정된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.
- 나. 너풀거리거나, 찢어진 작업복을 입지 않아야 하며 필요 시 안전조끼(형광)를 착용한다.
- 다. 안전모,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고 점검한다.(점검 시 안전모 착용)

2. 차량운행

- 가. 차량 출발 전에 조향, 제동 등 각종 지시기를 점검한다.
- 나. 안전벨트는 필히 착용하고,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서행운전 한다.
- 다. 운전 중 잡념, 잡담, 흡연, 음주를 절대 금한다.

3. 협의, 점검

- 가. 굴착공사 협의 시는 친절하게 응대한다.
- 나. 정압기실 점검 시 상황실에 통보한 후 입실하고 작업을 진행한다.
- 다. 시설점검, 보수 시는 경계책, 안내간판, 경광등을 켠 차량을 전방에 설치한 후 작업한다.
- 라. 모든 밸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기적으로 ON/OFF 기능을 점검하고 항상 전개 또는 전폐 상태로 유지하며 밸브박스 내부는 청결하게 관리한다.
- 마. 각종 시설점검을 완료 후에는 누출검사를 실시한다.

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11/36

부표2-마

공사관리담당자 안전수칙

- 1. 모든 공사관리담당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한다.
- 2.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안전모, 안전화를 착용하며, 안전작업 용구 및 구호용 장구류를 정비 확보해야 한다.
- 3. 작업환경은 항시 정리, 정돈하고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한다.
- 4. 공사관리담당자는 공사현장에 시공관리자를 정하여 상주하도록 한다.
- 5. 공사현장 부근의 주민에게 공사내용,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.
- 6. 현장 내에서는 금주, 금연을 시키고 안전점검 후 시공하도록 한다.
- 7. 불안전한 작업을 할 시에는 시공관리자에게 통보, 시정조치 후 시공하도록 한다.
- 8. 방사선 투과검사 시에는 출입금지 구역을 표시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.
- 9. 지하실, 맨홀 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절단, 연결, 구멍 뚫기 작업 등을 할 때는 가스중독, 산소 결핍, 폭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.
- 10. 공사관리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작업자에게 작업방법, 순서, 안전수칙, 시설물 보안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- 11. 공사관리담당자는 공사주변 위험요소 및 위해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한다.
- 12. 교통 안전 도모 및 통행자 안전을 위해 신호수, 안전휀스,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다.

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개정번호 0 페 이 지 12/36

부표2-바

작업복장 및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

- 1. 작업할 때에는 지정된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.
- 2. 작업 시에는 발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3. 작업 시에는 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. 단, 회전 기기 (동작 중) 작업 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4. 작업 시에는 머리 보호를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, 전기 및 계기작업 시에는 절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5.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
- 6. 용접작업, 그라인더작업, 유독물질 취급 등에는 눈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다.
- 7. 가스누설 (체류) 장소 및 산소 농도가 18% 미만 장소에 출입 시에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.
- 8. 유독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에는 방독마스크나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필터를 필히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9.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.
- 10.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귀마개 및 귀덮개를 착용해야 한다. (90~100dB:귀덮개, 100dB이상:귀마개+귀덮개)
- 11. 가스누설, 가스 체류의 위험성 및 위험 장소에서는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.
- 12. 작업복은 어떠한 경우라도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열작업 및 폭발 위험성 장소에서는 소매를 걷거나 하여 피부를 노출시켜서는 안된다.

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13/36

부표2-사

용접 및 절단작업 안전수칙

- 1. 용접절단 및 화염을 사용하는 작업 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준비해 놓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.
- 2. 용접 시 보안경, 용접장갑, 용접 앞치마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.
- 3. 밀폐된 장소에서는 환기장치가 충분히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용접이나 절단작업을 해야 한다.
- 4. 용접하고자 하는 용접물과 접속도선은 계단의 손잡이 전기기기 또는 공정배관 등 에 접속시켜서는 아니 되며, 용접은 용접기로부터 50m 이내에서 작업해야 한다.
- 5. 폭발성, 인화성 물질이 들어 있던 파이프, 용기 및 기타 기기는 내용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6. 산소 + 아세틸렌 용접기에는 역화 방지기를 설치하며, 교류 아-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 방지기 등을 설치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7. 접속도선의 연결을 확실히 하여 불완전한 접속으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8. 용접기를 가동시켜 놓고 위치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.
- 9. 산소 용접기의 화구에 불을 붙일 때는 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점화구를 사용한다.
- 10. 아세틸렌은 15PSI 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11. 용기, 조정기, 호스 연결부위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하고, 이상 발견 시 즉시 조 치토록 해야 한다.
- 12. 산소나 아세틸렌 용기에 열이나 심한 충격을 가해서는 안되며, 용기의 저장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항상 35℃ 이하로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.
- 13. 용기를 수직으로 세워둘 경우에는 쓰러지지 않도록 체인으로 고정시켜야 한다.
- 14. 용기 밸브를 닫거나 여는 데는 전용의 T형 렌치나 키를 사용해야 하며, T형 렌치나 키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아세틸렌 용기 밸브를 막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. 아세틸렌 용기 밸브는 한바퀴 반 이상 열어서는 안되며 용기 밸브는 파손되지 않도록 처음에는 조금 열어야 한다.
- 15. 작업이 완료되면 밸브를 잠그고 조정기 및 호스 내에 들어있는 가스압력을 제거해야 한다.



공 급 시	시설
-------	----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페이지 14/36

부표2-아

전기 안전수칙

- 1. 전기담당자 이외에는 전기수선을 하지 말아야 한다.
- 2. 전기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전기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수리 후 사용하도록 한다.
- 3.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플러그를 뽑아둔다.
- 4.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.
- 5.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져서는 안 된다.
- 6. 전기스토브 등의 전열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중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.
- 7. 전기 스위치, 콘센트, 전동기, 배선반 등의 전기기구에 액체성 물질을 뿌리지 않아야 하며 수증기 등의 습기가 접하지 않도록 한다.
- 8. 전선 또는 전기기구에 물건을 걸어 놓아서는 안 된다.
- 9. 전선 및 콘센트는 규정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10. 배선상태 및 전기기구의 안전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후 사용한다.
- 11. 각종 전기 스위치 및 판넬 등의 전기 시설 점검 시에는 전기를 끄고 점검한다.
- 12. 전열기 주변에는 인화성, 가연성 등의 위험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.
- 13.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.
- 14. 낡은 전선 및 전기기구는 수리 후 사용한다.
- 15. 인화성 및 폭발성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곳의 모든 전기 시설은 방폭설비 및 방폭구조의 기구를 사용한다.
- 16. 촉수엄금 등 취급제한 전기 시설은 담당자 이외에는 만져서는 안 된다.



제정일자 2020.12.21 개정번호 0

주관부서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개성면오 0 페 이 지 15/36

안전솔루션팀

부표 2-자

전기 및 기계작업 안전수칙

- 1. 기계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중인 기계는 "고장", "사용못함"등의 꼬리표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2. 아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전기계통에서 작업 시는 보안경을 써야 한다.
- 3. 고압전기 회로 근처에서 작업 시는 작업화, 작업복에 습기가 없도록 하고 옷을 깨끗이 입어야 한다.
- 4. 전류가 통하고 있는 전기기구에 작업복 등이 닫지 말아야 한다.
- 5. 금속성 측정용 "자"는 전선로나 전기도체 근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6. 금속성 사다리는 전기회로 부근에서 사용할 수 없다.
- 7. 사다리 설치 시, 사다리 밑바닥이 사다리 길이의 1/4이상 벽에서 떨어져야 하고 문 앞에 설치할 때는 문을 완전히 열어 놓거나 시건을 한다.
- 8. 휴즈는 반드시 규정치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9. 각종 스위치를 열때는 전원의 공급 여부를 테스트용 계기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.
- 10. 부하가 걸려 있는 안전스위치나 차단스위치는 관계 책임자의 허락 없이 열지 말아야 한다.
- 11. 전압 110볼트 이상의 회로에는 절연장갑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.
- 12. 전류가 흐르는 전기기구 부근이나 위에서 작업할 때는 전기기구를 고무포 등으로 보호조치 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13. 모터 또는 펌프 수리 시에는 모터 스타터(STARTER)에 운전자 및 작업자가 공히 시건 장치를 해야 한다.
- 14. 정비 작업 시는 스위치에 규정대로 위험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이 끝나면 즉시 표지를 떼어야 한다.

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16/36

부표2-차

정비 작업시 안전수칙

- 1.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시설 작업 감독자로부터 작업전반에 걸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인식한 후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.
- 2. 사다리나 발판이 필요한 곳에서는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가늘고 약한 파이프에서 올라서거나 매달리지 말며 힘을 주어서도 안 된다.
- 3.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는 물론, 필요에 따라 소방장비 및 소화기 등도 준비해야 한다.
- 4. 작업장과 연결된 배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밸브를 차단하고 맹판(블라인드 플랜지)을 끼워야 한다.
- 5. 작업에 따라 작업장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지를 부착하여 작업중임을 알리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.
- 6. 파이프 등 거친 철재를 취급할 때는 작업용 장갑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7. 모든 기구는 사용 전 그 강도를 점검해야 하고 작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.
- 8. 절차와 방법을 확실히 모르는 것을 실험 삼아 해보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한다.
- 9. 떨어지기 쉽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일할 때에는 밑 그물을 쳐놓고 작업을 해야 한다.
- 10. 사용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된다.
- 11. 모든 기기와 장비는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조작해서는 안 된다.
- 12. 모든 작업은 작업지침서에 준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.

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페이지 17/36

부표2-카

운반 및 사다리작업 안전수칙

- 1. 기계나 적재물, 나무상자 등을 사다리 대신 사용하지 않는다.
- 2. 사다리는 사용 전에 결함 여부를 꼭 점검한다.
- 3. 직선사다리(외줄사다리)를 사용할 때는 벽으로부터 1m 이상 띄워야 한다.
- 4. 손을 잡을 때와 발을 디딜 때는 특히 조심한다.
- 5. 사다리로부터 자기 팔 길이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.
- 6. 사다리를 오르기 전 밑을 고정시키고 올라 갈 때는 두 손을 사용한다.
- 7. 출입문이나 통로 가까이에 사다리를 붙이거나 바리케이트를 설치한다.
- 8. 자재나 공구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릴 필요가 있는 경우 로프 등을 이용한다.
- 9.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통행로 혹은 작업을 방해할 곳에 사다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.
- 10.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물건은 먼저 그 크기와 무게를 검사하고 못이나 기타 위험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본다.
- 11. 물건을 들어 올릴 때에는 될수록 물건 가까이에 꿇어 엎드린 다음 물건을 힘껏 잡고 발을 벌린 다음, 무릎을 꿇고 다리를 천천히 펴야 한다.
- 12. 들어 올릴 때에는 불완전한 자세를 피하고 다리를 완전히 펼 때까지 발을 옮기지 않는다.
- 13. 물건을 운반도중 잡은 손의 위치를 변경하지 말고 지주에 기댄 다음 고쳐 잡아 야 한다.
- 14. 물건을 내릴 때는 등을 굽히지 말고 다리를 굽혀야 한다.
- 15. 물건을 놓을 때는 한 쪽 귀퉁이를 놓은 다음 손을 슬며시 빼야 한다.
- 16. 크거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 때는 타인과 함께 운반한다.
- 17. 한 물건을 두 명 이상이 들 때는 취급 방법을 먼저 상의하고 한 명은 리더로 나서서 통로를 살피고 뒤따르는 사람을 코치해서 보조를 맞추도록 한다.
- 18. 긴 물건을 들어 운반할 때는 같은 쪽에서 들어야 한다.
- 19. 자기 힘에 겨운 물건을 무리하게 다루지 않도록 하고, 무거운 물건은 기중기, 지게차 또는 적당한 운반기구를 이용하여 운반한다.
- 20. 물건을 취급할 때는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후 내용물이 위험물이거나 독 극물일 때는 적절한 방독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한다.
- 21. 운반용구는 항상 점검 및 수리하여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.



공	급	λΙ	설
0		7 1	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18/36

페 이 지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부표2-타

화재 안전수칙

- 1. 허가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이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.
- 2. 가연성. 인화성 물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.
- 3. 소화기는 점검, 정비, 소화액 보급 등을 철저히 하고 점검표를 붙여서 점검, 정비, 사용 등을 기록한다.
- 4. 소화기의 배치 장소를 알아둔다.
- 5. 소화기의 사용법을 알아둔다.
- 6. 소화기나 소방호스, 소화전은 항상 정상상태로 유지한다.
- 7. 경보 장치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알아둔다.
- 8. 화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화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장을 벗어난다.
- 9. 하수구에는 절대로 유류를 버려서는 안 된다.
- 10.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서에 신속하게 신고한다.
- 11. 가스누설 차단 후 진화작업을 실시한다.
- 12. 화재 발생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소화기로 신속하게 진화작업을 한다.
- 13. 가스 소화는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(포말 소화기는 소화효과 미흡)
- 14. 퍼지 작업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연소시킨다.
- 15. 가스스토브, 전기스토브는 꼭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중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.
- 16.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, 주위에는 화기 사용을 금한다.

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19/36

부표2-파

차량운행 안전수칙

- 1. 교통법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있다는 생각을 명심하고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
- 2. 차량운행은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양보운전으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다.
- 3. 차량 운행 시 추측운전은 삼가한다.
- 4. 차량 운행 시 복장은 근무복, 작업복 및 운행에 불편함이 없는 복장이어야 하며, 슬리퍼, 샌들 등의 신발착용은 금지한다.
- 5. 차량운행 전 점검사항.
 - 가. 안전밸브의 이상유무, 연료상태, 브레이크 페달의 밟히는 상태등을 확인한다.
 - 나. 반사경으로 차량 뒤가 잘 보이는지 확인한다.
 - 다. 전조등, 방향지시 등의 점멸 및 이상상태 확인 한다.
 - 라. 타이어 상태(공기압, 균열, 마모상태 등)를 확인한다.
 - 마. 차량 안전용구(예비타이어, 소화기, 고장표시 삼각대, 타이어교체 공구류 등) 확인한다.
 - 바. 순회점검차량은 순회점검에 필요한 장비/공구가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.
- 6. 차량운행 중 지켜야 할 사항.
 - 가. 급출발, 급제동은 피하며, 과속을 하지 않는다.
 - 나.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.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운전한다.
 - 다. 신호가 없는 사거리, 비보호차선 및 차선을 바꿀 때는 전,후,좌,우의 차량을 살핀 후 출발한다.
 - 라. 횡단보도 통과 시 신호등에 주의하고, 갑자기 달려오는 사람이 없는지 살핀 후 출발한다.
 - 마. 야간 운행시에는 주간보다 속도를 낮추어 운행한다
 - 바. 안개, 눈, 비 속에서 운행시 속도를 낮추고, 안개등을 켜고, 차선 및 앞차 미등을 주시하고 천천히 운행하며,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한다.
 - 사. 빙판길, 눈길에서는 급제동, 급출발을 금하고, 산모퉁이나 음지의 빙판길을 조심하며 절대 감속한다.
- 7. 엔진오일, 냉각수, 펜벨트, 워셔액 등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교체시기에 맞추어 교체한다.
- 8. 사내에서는 저속(20km/h이하)으로 운행하며,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고 제동장 치를 확인한다.
- 9. 차내에서 동승자와 떠들거나.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.
- 10. 차량의 내·외부는 항시 청결을 유지하며, 차내의 물건은 항시 정리 정돈한다.

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20/36

페 이 지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안신구석 납부걸사시

부표2-하

통행 안전수칙

- 1. 구내 통행 수칙을 잘 알아두고 준수한다.
- 2.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우측통행을 한다.
- 3. 높은 곳이나 계단 등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.
- 4. 통로를 보행할 때는 움직이는 기계를 잘 살피고 조심한다.
- 5. 달리는 운반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는다.
- 6. 통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즉시 치우는 습관을 기른다.
- 7. 물건이 놓여 있는 곳을 넘어다니지 않으며 그 위를 걷지도 않는다.
- 8. 통제 구역이나 지름길을 허가 없이 다니지 않는다.
- 9. 문의 개폐는 조용히 하며, 문을 열 때 자기 앞으로 당기게 되어 있는 문은 반드 시 옆으로 서서 당긴다.
- 10. 위에서 작업 중이거나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는 그 밑을 일체 통행하지 않는다.
- 11. 설비 밑으로 통행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쓴다.



공	급	λΙ	설
0		71	2

주관부서 안전솔루션팀 제정일자 2020.12.21 개정번호 0 페 이 지

21/36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부표2-갸

수공구 안전수칙

- 1. 수공구는 쓰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점검한 다음 사용한다.
- 2. 정이나 끌과 같은 기구는 때리는 부분이 버섯모양 같이 되면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, 자루가 망가지거나 유격이 넓어지면 새것으로 교체한다.
- 3. 수공구 사용 후 반드시 원래 위치에 보관한다.
- 4. 파편이 비산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한다.
- 5. 각 수공구는 일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.



공	급	λΙ	설
0		71	2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페이지 22/36

부표2-냐

적재 안전수칙

- 1. 밑부분이 안전하게 놓여 있지 않으면 물건을 쌓아서는 안 된다.
- 2. 물건의 적재 높이는 물건의 종류, 무게, 바닥에 받치는 힘 등의 필요 시에 따라 결정한다.
- 3. 가능하면 적재물을 묶어 고정한다.
- 4. 천정과의 거리를 상당히 띄우고 전구나 파이프 가까이는 적재하지 않는다.
- 5. 통로나 출입구의 근처에는 적재하지 않는다.



공 급 시 설	주관부서	안전솔루션
등 급 시 월	제정일자	2020.12.21
안전수칙 업무절차서	개정번호	0
한선구역 합구절자시	페 이 지	23/36

부표2-댜

방문자 수칙

- 1. 당사의 출입 시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해야 한다.
- 2. 용무 외의 구역은 출입을 금한다.
- 3. 용무가 끝나고 정문을 나갈 때는 반드시 출입증을 반납한다.
- 4. 작업장의 출입 시는 책임자의 지시 및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행동을 일체 금한다.



공 급	시	설
-----	---	---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페이지 24/36

부표3-가

상황실 안전수칙

- 1.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자는 근무자의 승낙을 득한다.
- 2. 통신기기 사용은 반드시 회사 내 송수신 요령에 의한다.
- 3. 근무자는 고객불편사항, 기타 긴급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, 보고한다.
- 4. 근무자는 비상사태 발생(비상출동)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및 임직원의 비상 연락 망을 최신으로 유지·관리한다.
- 5. 근무자는 상황실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비품은 깨끗하게 정리 정돈한다.
- 6. 근무자는 상황실 내 각종 기기들이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며, 타인으로부터 주요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근무교대 및 인수인계 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.
- 7. 상황실 내 각종기기(컴퓨터, 화면분배기, 모바일 통신기기 등)는 담당자 이외에는 절대 조작을 금한다.
- 8. 근무자는 근무자 외의 직원이 근무 및 비상사태 발생시에 사용 또는 조치하여야 할 기기에 있어서는 조작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.
- 9. 상황실 내 흡연을 금하고 하론 또는 CO2소화기를 지정된 위치에 비치한다.
- 10. 상황실 내 인화성 물질 등 일체의 위험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.
- 11. 각종 안전장치에 경보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응급조치 (BUZZER STOP, 타 시설과 연동확인 등)를 취한 후 해당 팀에 즉시 전달한다.

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25/36

부표3-나

정압기실 안전수칙

- 1. 정압기실 주위 경계책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.
- 2. 정압기실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.
- 3. 정압기실 입실 전 정압기실 주위에 가스냄새 등 가스누설 유무를 확인한다.
- 4. 정압기실 위험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진행한다.
- 5. 정압기 분해점검 작업은 반드시 전·후단밸브를 잠그고, 관내가스를 퍼지 시킨후 실시하고 작업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.
- 6. 입실시간은 가급적 짧게하고 점검부분의 체결상태 등 주위점검을 철저히 한다.
- 7. 이상부분 발견 시 즉시 긴급조치하고 본사 상황실에 보고한다.
- 8. 정압기 실내에는 일체의 인화요인을 두어서는 안 된다.
- 9. 위험물의 반입을 금하며 음주 후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.
- 10. 흡연이나 화기를 금하며 Spark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11. 부득이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실 내 가스체류 및 가스누설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고 소화기 등의 소화장비를 갖춘 후 작업을 진행한다.
- 12.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방폭구조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 (작업시에는 반 드시 Non-Spark Tool을 사용하고 일체의 전기기구를 취급해서는 안되며 특히 정전기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.)
- 13. 구역담당자 이외에 출입시 상황실에 보고 후 출입한다.

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26/36

페 이 지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한선구역 납구글사시

부표3-다

정압기 분해점검 안전수칙

- 1. 분해점검 작업 전에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하고, 분해점검 작업 시작 전에 상황실에 보고한다.
- 2. 입실 전 가스의 누설 (체류) 유무 및 산소농도를 확인한다. (가연성농도 0.18%이하, 산소농도 19-21%)
- 3. 작업 시에는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작업을 하고 1명은 수시로 외부인 출입 및 화기 등을 통제한다.
- 4. 음주상태의 작업이나 흡연은 절대로 금한다.
- 5. 분해점검은 반드시 가스 전. 후단의 밸브를 차단하고 퍼지 후 실시한다.
- 6. 가스밸브의 밀림상태를 확인하고 이상부분의 발견 시 즉시 긴급조치하고 상황실 에 보고한다.
- 7. 각 부위 점검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공구 등의 충격으로 스파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.
- 8. 점검종료 후 접합부의 누설점검은 가스누설 점검액(비눗물 등) 또는 가스검지기로 하고 작동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.
- 9. 가스공급 시 밸브의 조작은 서서히 조정한다.
- 10. 작업완료 후 원격감시장치 기능을 점검하고 이벤트 처리사항을 확인 후 상황실 에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한다.

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27/36

부표3-라

가스누설 시 안전수칙

- 1. 세대 및 실내 가스누출 신고 접수 시
 - 가. 다음 사항을 신고자에게 유도한다.
 - 1) 밸브잠금

연소기 콕크 및 퓨즈콕 및 가스계량기에 부착된 밸브 잠그도록 한다.

2) 환기 및 화기조심

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충분히 시킨다. 이때 선풍기 또는 환풍기를 사용하지 말며,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됨을 주지시킨다.(전기스파크는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.)

나. 현장 출동자

- 1) 세대 방문 또는 실내 점검 시 가스검지기로 잔류가스가 있는지 확인한다.
- : 이때 가스검지기가 작동하면 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 후 폭발범위 등 이상 이 없을 때 실내에 들어간다.(만약 산소농도가 18% 이하 시 공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 후 매몰밸브실 등 출입 시 최소 2인 1조로 작업을 한다.)
- 2) 가스관련 밸브 차단유무 및 화기가 없는지 확인 후 시설을 점검한다.
 - 누출 점검은 검지기 및 비눗물 등을 이용하여 배관, 가스레인지, 보일러및 가스계량기 등 각종 이음부 등을 점검한다.
- 3) 누출부위를 발견되면 임시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임시조치를 한다.
 - : 고무바 또는 고무찰흙 등을 이용하여 누출부위를 견고히 조치하고, 검지기 로 누출검사를 실시한다.
- 4) 임시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대에 시설보수 및 검사 후 사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, 가스계량기 전단밸브를 봉인조치 하여 사고를 방지한다.
- 2. 실외 가스누출 신고 접수 시
 - 가. 사고에 의한 가스누출 또는 주위에서 가스냄새가 나는 것인지 등을 파악 후 현장상황에 맞게 신고자를 유도한다.
 - 1) 가스누출 위치가 확인될 때
 - 가) 가스 누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밸브를 차단(가스사용자시설일 경우) 또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
 - 나) 주변의 점화원이 될 수 담뱃불 등을 차단하며, 필요 시 사람이나 차량을 통제한다.
 - 2) 가스누출 위치가 미확인될 때
 - 가) 주변을 통제하여 가스누출에 의해 폭발 및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한다.
 - 나) 현장출동자는 가스누출 원인을 끝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.

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제이지 28/36

부표3-마

기존배관 연결작업 안전수칙

- 1. 공사 전에 도면조사, 현지답사, 시험 굴착 등으로 기초조사를 한다.
 - 가. 지하매설물조사 (타 매설물의 위치,재질등과 가스관의 매설깊이, 공급상황등)
 - 나. 현장의 도로구조 조사(보도 및 차도의 넓이, 수로의 유무, 도로표지 등)
 - 다. 도로환경의 조사(교통량의 정도,연도의 상황, 공사 중 통행 규제방법 등)
- 2. 공사 전에 작업계획서, 표준화 매뉴얼,공기구 및 장비류를 점검하고 안전시설물과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한다.
- 3. 작업 전에 작업사항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(작업원 업무숙지)
- 4.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.
- 5. 작업현장에는 항상 긴급보수용 기자재를 준비한다.(공기호흡기,목전 및 목해머,소화기,점토,방식테이프,로우프, 휴대용 확성기, 적색깃발, 조명등, 구급약품, 그 외임시보수에 필요한 공구 및 재료)
- 6. 비상시 각 부서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.
- 7. 공사 중 사고발생시는 2차적 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LOOP밸브 및 긴급차단밸 브를 숙지하고 신속히 보고한다.
- 8. 가스공급을 일시 차단한 공사 시는 가스사용자에게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문서 배포,안내방송, 호별방문 등을 실시한다.
- 9. 절단, 구멍 뚫기 작업 등으로 가스누출시 중독,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한다.
 - 가. 작업은 원칙적으로 가스누출을 차단 후에
 - 나. 가스 검지기 등으로 가스누출 유무 확인
 - 다. 2인 이상으로 조편성 하고 1명은 작업상태와 주위를 감시
- 10. 산소 결핍이 예상되는 장소의 작업 시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.
 - 가. 산소농도측정기에 의해 산소농도를 측정, 농도가 19%이상임을 확인 후 작업
 - 나. 공기호흡기, 방폭 플로워, 안전벨트를 준비
 - 다. 작업은 2인 이상
- 11. 공사 후 가스공급 재개 시는 가스를 완전히 퍼지한 후 점화시험을 하여 정상적 인 상태에서 가스공급을 한다.

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29/36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부표3-바

구멍 뚫기 작업 안전수칙

- 1. 구멍 뚫기 작업 공기구 확인
 - 가. 각 규격, 압력에 맞는 장비 셋트 준비
- 2. 작업 안전수칙
 - 가. 구멍 뚫기 작업 전 기밀시험 실시(수주계, 자기 압력기록계 디지털마노미터)
 - 나. 작업장 안전 준비사항
 - 1) 작업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는가?
 - 2) 토사붕괴 위험은 없는가?
 - 3) 작업자의 안정된 자리는 확보한다.
 - 4) 작업장 주위의 교통제한 및 화기 유입방지조치는 되었는가?
 - 다. 긴급상황 발생(대비)조치사항
 - 1) 인근 차단밸브 및 LOOP 밸브 확인 또는 점검
 - 2) 화기 초기진화 및 피해확산 방지대책 강구

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30/36

부표3-사

가스백(GAS BAG)절단연결 작업 안전수칙

- 1. 소요공기구 확인
 - 장비 소재가 완료된 무분출 가스백 차단장치 준비
- 2. 작업안전수칙
 - 가. 구멍 뚫기 작업 전 관내의 가스흐름방향 및 가스압력 확인
 - 나. 저압 절단연결 시 관내 가스흐름방향에 따라 GASBAG작업순서를 결정한다
 - 다. GASBAG 소켓은 절단부로부터 최소한 12D 이상 이격.
 - 라. GASBAG 설치 후 작업공간내의 잔류가스는 질소치환 후 검지기(XP- 311A) 로 점검하며 차단 GASBAG 후단에 작업 종료 시까지 질소를 주입한다.
 - 마. 작업완료 시까지 GASBAG압력을 주시하고, 압력이 떨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GASBAG 교체를 하여야 한다.
 - 바. 가스 재공급 순서
 - 1) 가스흐름 방향에 설치된 GASBAG부터 철거
 - 2) 작업공간내 잔류된 질소를 가스로 치환
 - 3) GASBAG설치용 소켓부 용접 후 누설검사 실시 및 정상 공급
 - 사. 방식작업 및 방호조치후 되메우기 작업 실시.

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페 이 지 31/36

부표3-아

퍼지 및 가스공급 안전수칙

- 1. 공기방출은 연결공사 완료 후 신설배관에 관련된 전 배관망에 대하여 시행한다.
- 2. 기밀시험용 공기는 자연압 상태까지 방출한 후 밸브를 서서히 열어 가스를 유입한다.
- 3. 기존배관의 가스압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가스를 유입시키면서 다른 한쪽에서 공기를 방출한다.
- 4. 구경 또는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불활성가스에 의해 공기를 방출한 후 가스에 의해 불활성 가스를 방출시켜 치환한다.
- 5. 공기방출 장소는 화기가 없는 안전한 곳을 선택하고 일반인이나 차량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.
- 6. 공기방출이 끝났을 때에는 관내 가스를 산소농도검지기로 농도를 측정 (0%) 하거나 고농도검지기로 가스농도를 측정 (85%) 하고 점화시험을 하면서 가스 치환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급한다.
- 7. 가스를 공급한 후 밸브, 기타 부대시설물을 순회점검하여 가스 누설여부를 확인한다.
- 8. 세대 내 가스 공급 시는 각 세대의 마감조치를 확인한 후 공급한다.
- 9. 신규인입 및 공급관 교체연결을 한 수요가에서는 연소기에서 점화시험을 하여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.
- 10. 필요에 따라서 수요가 및 관계자들에게 가스개통, 복구를 확인한다.



_	_		, ,
<u> </u>		ΑI	Δ
0		71	_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TH OLT	32/36

부표3-자

퍼지작업 안전수칙

- 1. 관계 배관계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.
- 2. 안전관리자나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에 작업의 사항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- 3. 퍼지 장소는 가연성 물질이 없는 안전한 곳을 선택하고 주위에 경계책, 안내판의 설치와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준비한다.
- 4. 가스차단밸브에는 봉인조치를 하고 감시인을 두어 퍼지 장소와 항상 긴밀히 연락체계를 유지한다.
- 5. 퍼지작업 중에는 깃발 등으로 항상 풍향에 주시하고 차단밸브의 밀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.
- 6. 가스를 퍼지 할 때는 항상 전용연소기로 연소시키고 저압상태로 점화 후 서서히 불꽃의 길이를 증가하여 안전하게 연소시킨다
- 7. 연소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가스전용 퍼지 기구를 사용하여 방출시킨다.
- 8. 가스의 자연 퍼지 작업 시는
 - 가. 2m 이상의 높이로 가스가 주변 건물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출시킬 것. (인근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상단 이상)
 - 나. 방출된 가스의 착지농도가 폭발하한계 값의 1 / 4 이하가 되도록 방출량을 조정하여 수시로 주변 가스농도를 검지기로 측정할 것.
 - 다. 주위에 화기 유입방지 조치를 할 것. (흡연통제, 차량통제 등)
- 9. 지하에서 퍼지작업은 일체 금하며 실내로 가스방출은 일체 금한다.

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33/36

부표3-차

굴착작업 안전수칙

- 1. 공사계획을 세워 공사관리담당자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.
- 2. 계획서 등에 표시된 규정의 위치도에 따라 도로면에서 공사위치를 확인한다.
- 3. 지하매설물 현황을 사전 감지하고 배관도면 및 기초조사를 한다.
- 4. 현장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안전표지, 비상시 연락처 등이 명시된 안내판을 설치한다.
- 5. 굴착장소에 근접해 있는 전주 등 구축물의 상황을 판단하고 계획서에 의해 지면 에 굴착폭을 표시한다.
- 6. 시공관리자는 1일 1회 이상(작업개시 전) 시공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- 7. 굴착기의 운전자는 시공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, 시공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한다.
- 8. 도로굴착은 원칙적으로 당일 중 공사완료로 하며 계속 공사 시는 필히 흙막이공을 시공하는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9. 진동이 심한 굴삭기는 근접 매설물이나 건축물 등에는 사용을 금한다.
- 10. 지하매설물 주변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매설물 관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.



주관부서안전솔루션팀제정일자2020.12.21개정번호0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페 이 지 34/36

부표3-카

용접작업 안전수칙

- 1. 작업 전에 작업사항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- 2. 용접장 주변에서 인화성 및 가연성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.
- 3. 현장에는 소화기 및 긴급보수용 기자재를 준비한다.
- 4. 자동전격방지 장치가 설치된 용접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한다.
- 5. 용접사는 자격소지자 이어야 하며 상주한 시공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다.
- 6. 작업 시는 개인 안전구를 착용해야 한다.
- 7. 굴착구내에서 용접 시는 흙막이공으로 보호한다.
- 8. 야외작업 시는 비바람에 대한 방호조치 및 용접용 커튼을 사용해야 한다.
- 9. 가스누출의 우려가 있는 배관 용접 시는 전. 후단의 밸브를 차단하고 다음조치를 시행해야 한다.
 - 가. 차단밸브에는 조작금지 팻말 부착
 - 나. 감시인 배치
 - 다. 배관내부의 잔류가스를 퍼지하고 질소로 치환
 - 라. 가스검지기로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시 막음조치
- 10. 밀폐공간(구조물,탱크,PIT등)에서 용접작업은 충분한 환기와 지상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조공구를 착용한다.
- 11. 밸브의 용접 시는 그리이스공의 주유를 충분하게 하며 개방된 상태로 용접작업을 한다.
- 12. 배관의 말단에는 필히 맹판으로 마감조치를 한다.
- 13. 용접을 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고, 사용 중 홀더선이 습한 땅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35/36

부표3-타

가스공급시설 점검 안전수칙

1. 점검 전

- 가. 점검사항 및 안전수칙을 숙지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.
- 나. 개인보호장비(안전모, 안전화, 안전조끼 등) 및 교통안전장비를 준비한다.
- 다. 점검에 필요한 안전장비(가스누출검지기, 산소농도측정기 등) 및 안전공구를 준비한다.
- 라. 상황실과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장비를 준비한다.

2. 점검 중

- 가. 주변 안전조치(안내판, 안전휀스, 라파콘 등)를 하고 순회점검차량을 전방에 배치 후 점검을 실시한다.
- 나. 점검자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후 점검을 실시한다.
- 다.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의 점검 시에는 2인이상으로 하여 차량 통제를 실시하여 야 한다.
- 라. 점검 중에는 출입문이나 맨홀 뚜껑을 완전히 개방한다.
- 마. 정압기실이나 밸브점검 시에는 가스누출검지기로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고, 작업 중에도 수시로 확인한다.
- 바. 지하맨홀 또는 깊은 맨홀을 점검 전에는 산소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한 후 점 검을 실시하며, 산소농도를 수시로 확인한다.
- 사. 지하맨홀 또는 깊은 맨홀을 점검 시에는 2인이상으로 하며, 지상에 감시원을 두고 점검한다.
- 아. 점검 대상을 작동할 때에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, 충격으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자. 점검 시 화기유입을 방지하여야 하며, 만일을 대비해 소화기를 점검장소에 비 치한다.
- 차. 정압기실 출입 시에는 상황실에 통보 후 점검을 실시한다.

3. 점검 작업 후

- 가. 점검이 완료되면 시설물이 정상상태에 있는지 확인한다.
- 나. 시설물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주유를 한다.
- 다. 점검 후 가스누출검지기 또는 검지액으로 가스누출여부를 최종 확인한다.
- 마. 점검을 실시한 시설물 주변을 정리한다.



안전수칙 업무절차서

주관부서	안전솔루션팀
제정일자	2020.12.21
개정번호	0
페 이 지	36/36

부표3-파

가스사용 안전수칙

1. 사용 전

- 가.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(가스냄새 또는 가스경보기 작동여부)를 확인한다.
- 나. 연소기를 사용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킨 후 사용한다.

2. 사용 중

- 가. 연소기를 점화할 때는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.
- 나. 바람, 음식물 등에 의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다. 수시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킨다.
- 라. 보일러의 경우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이 되지 않고 실외로 잘 배출되는지 확 인한다.
- 마. 사용 중 이상현상 발생 시 연소기 제조사에 A/S 요청하여 수리 후 사용한다.

3. 사용 후(평상 시)

- 가. 연소기 콕크 및 퓨즈콕 등 중간밸브를 모두 잠가야 한다.
- 나. 호스와 연소기 등 각종이음부 가스누출유무를 비눗물 등으로 수시로 점검한다.
- 다. 연소기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.
- 라. 연소기 주위에는 행주 등의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한다.
- 마. 보일러 배기통이 찌그러짐 또는 처진 곳이 있는지, 배기통 접속부가 이탈된 곳은 없는 지 수시로 점검한다.
- 바. 연소기의 변경 또는 설치 시 반드시 전문시공자설치하여야 하며, 도시가스 공 급자에게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.
- 4.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가스연소기의 콕크는 물론 퓨즈콕 및 가스계량기 전단밸브를 잠궈 만약의 사고를 방지한다.
- 5. 이사를 갈 때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연락하여, 가스시설의 막음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